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97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19년 4월 3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백호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2011년 9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19.06.30.자로 3번째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금년 1월 22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종합 성과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사업비 내역 보완 및 제출 등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해 공개채용 절차(공고기간 준수), 지출처리(건별 품의 작성), 사업비 투명성 확보(175개 사업비 편성 내역 제출) 등 보완 조치 완료하였음.

- 최종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시설로,
- 지난 3년간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은, 1981년 설립되어 청소년활동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등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
-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내 사랑의교실, 특별교육 등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간관계 회복에 기여하며, 모범적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 청소년전용공간 “소행성”, 청소년상설체험공간 “아트박스”를 조성하여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특성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과의 MOU를 체결하여 기업탐방, 디자이너 초빙 강의 및 실습 등 연계사업을 강화하였고, 4차산업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융합패션사업을 전개함.

-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동 법인에게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을 2년간 재계약 운영토록 하고자 함.

○ 3년간 주요 추진실적

- 이용인원

사업구분	이용 인원	청소년 이용인원	청소년 이용률
2016년	496,278명	294,492	64%
2017년	428,450명	299,149	68%
2018년	495,431명	346,503	70%

- 지역·학교연계 실적

구분	연도	기관	프로그램
학교연계	2016	10	99
	2017	6	105
	2018	33	224
지역사회연계	2016	4	15
	2017	7	17
	2018	16	15

- 주요 우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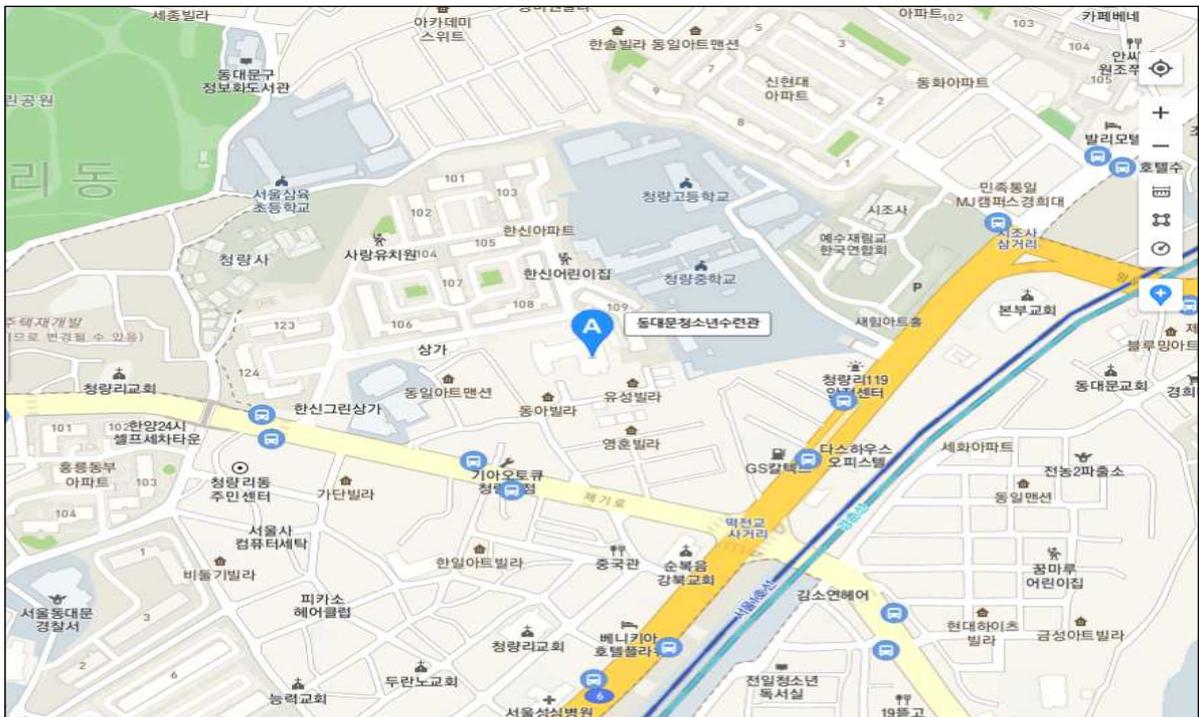
- ▶ 2016년 청소년시설 운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서울특별시)
- ▶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선정 (여성가족부)
- ▶ 2017년 청소년시설 운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특별시)

3) 위탁 사무의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 개관일자 : 2003.05.01.
- 시설규모 : 부지 2,899 m^2 , 연면적 4,888 m^2 (지하 2층, 지상 5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헬스장, 상설체험관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 2년 (2019.07.1 ~ 2021.06.30.)

6)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939백만원(20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649백만원, 물건비 573백만원, 경상이전 129백만원, 자본지출 226백만원, 사업비 1,220백만원, 사업외 지출 등 기타 142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조건부 적정 조치결과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최종 '적정'의결】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 종합성과평가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및 '사업비 투명성 확보'에 대한 조건부 적정
- 2018년 종합성과평가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
 - 공개채용 절차 부적정 : 신규채용 15일 이상, 재공고 및 계약직 종사자는 불가피한 경우 10 이상 공고기간 준수 및 직원예정자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전 실시하고, 향후 종사자 채용 절차 준수 및 고용안정화 정책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 지출업무처리 부적정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시 대상, 인원수 기재 및 건별 품의 작성 등 지출업무처리절차를 준수하였으며,
 - 물품관리 부적정 : 정기재물조사 계획 및 조사결과 청소년정책과 보고하였으며, 재물조사표(조사일자 표기 및 이전 법인의 미기재 자산) 부착, 주요 소모품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등 물품관리 절차를 준수함
 -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2017년 운영위원회 개최 시 참석자 서명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원초과(26명)에서 18명으로 적정 구성 완료함
- 사업비 투명성 확보
 - 전년도 사업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7개분야 27개 사업 175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편성내역을 제출하여 사업비 투명성을 확보함
- 상기 적정조건의 보완·제출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적정' 의결 통보(2019.2.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의 총괄내역

-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계약¹⁾ 4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²⁾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조례」는 미동의 민간위탁에 대해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금번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이 제출되었음.

<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의 개요 >

의안번호	시설명	구분	2019년예산 (백만원)	위탁시설 개요
597	시립 동대문 청소년 수련관	재계약	2,939	- 현 수탁기관 : (사)한국청소년연맹 - 소재지 :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 개관일자 : 2003.05.01 - 시설규모 : 부지 2,899㎡, 연면적 4,888㎡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598	시립 강북 청소년	재계약	5,479	- 현 수탁기관 :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소재지 : 강북구 4.19로 74 - 개관일자 : 2001.03.10.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2019년예산 (백만원)	위탁시설 개요
	수련관			- 시설규모 : 부지 6,801㎡, 연면적 6,409㎡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음악실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599	시립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재계약	3,034	- 현 위탁기관 :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개관일자 : 1986.12.09 - 시설규모 : 부지 5,100㎡, 총면적 5,260㎡ - 지원시설 : 공연장, 강의실, 청소년카페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600	시립 보라매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센터	재계약	611	- 현 위탁기관 : (재)서울카톨릭청소년회 -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개관일자 : 1986.12.09 - 시설규모 : 203㎡ - 지원시설 : 개인·집단 상담실, 교육실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 현재까지 평생교육국의 12개의 위탁시설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9년 6개소, 2020년 6개소가 계약만료될 예정에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최초위탁일	시작일	종료일
1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2006-4-17	2016-7-1	2019-6-30
2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06-7-1	2016-7-1	2019-6-30
3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09-2-12	2016-7-1	2019-6-30
4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2000-11-1	2016-7-1	2019-6-30
5	이동쉼터(서북)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04-4-12	2018-1-1	2019-12-31
6	이동쉼터(서남)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04-4-12	2018-1-1	2019-12-31
7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재)대산문화재단	2000-5-1	2017-4-1	2020-3-31
8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2012-3-28	2017-4-1	2020-3-31
9	서울시 청소년 드림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11-12-2	2017-7-1	2020-6-30
10	시립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12-7-1	2017-7-1	2020-6-30
11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2012-7-1	2015-7-1	2020-6-30
12	드림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11-12-2	2017-7-1	2020-6-30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³⁾에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민간위탁’과 유사한 용어의 비교

- 위 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 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대 행 :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그 업무의 수행만을 맡기는 것

〈 위임·위탁·민간위탁·대행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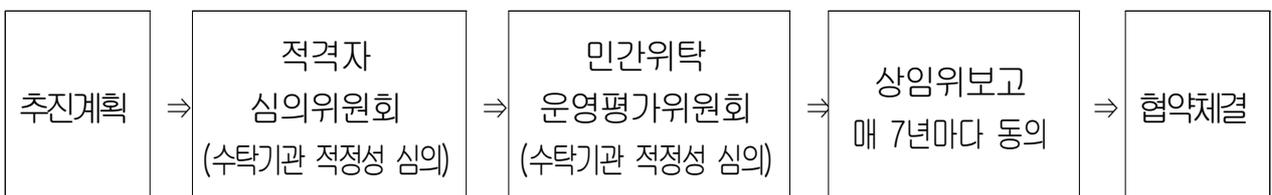
구분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권한 이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수임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위임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임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위탁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위탁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이전 없음 -대행기관은 위임 기관의 명의로 업무처리만을 대행 -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음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감독을 받는 하부기관(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상하관계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보조기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행정기관의 장 ※ 동급의 행정기관, 지휘·감독 받지 않는 하부기관 · 광역자치단체장→다른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다른기초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개인 ※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개인 ※ 계측·검측·검사 등 행정조사 관련 분야에서 널리 사용, 사용료·요금 등의 부과·징수에서 활용

3)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분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지휘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
사전 승인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임규정 • 사무위임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탁규정 • 사무위탁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탁규정 • 사무위탁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필요한 경우에 규정

○ 본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동의 상태의 위탁사무를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각 설립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 공공서비스의 지속 필요성,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조례」⁴⁾에 부합한다고 보여짐.

※ 학교장 권한의 휴무확대 및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수련·문화·교류·체험 등의 활동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훈련된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위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성, 능률성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특수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바,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① 동일 수탁법인의 동일 사항 반복 지적, ② 전문성 평가기준의 적정성, ③ 인력운영 합리성, ④ 동일 수탁 법인의 장기 수탁의 적정성, ⑥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율의 타당성, ⑦ 성과평가 항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살펴 재위탁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세부내용 검토

-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이하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한국청소년연맹과 2년간(2019.7.1.~2021.6.30.)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개요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 개관일자 : 2003.05.01
- 시설규모 : 부지 2,899㎡, 연면적 4,888㎡ (지하 2층, 지상 5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헬스장, 상설체험관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 2년 (2019.07.1 ~ 2021.0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939백만원(2019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추진경과 >

- 1차 2002.12.17. ~ 2006.04.16. (사)한국청소년마을 공개모집
- 2차 2006.04.17. ~ 2009.04.17. (사)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공개모집
- 3차 2009.04.18. ~ 2011.08.31. (사)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재계약
- 4차 2011.09.01. ~ 2014.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공개모집
- 5차 2014.07.01. ~ 2016.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재계약
- 6차 2016.07.01. ~ 2019.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공개모집

- 평생교육국은 (사)한국청소년연맹이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동대문수련관에서 추진했던 청소년사업(청소년활동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동대문 수련관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에서 ① 종합성과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과 ② 사업비 투명성 확보 등 조건부 적정관정을 받은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동대문수련관의 조건부 적정을 받은 사유

- 공개채용 절차 부적정, 지출업무처리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평생교육국은 조건부 적정에 대한 사항의 보완·개선책을 마련(2019.2.7.)하여, 재계약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2014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정감사의 적출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실정임.

- 2014년도에도 평생교육국은 (사)한국청소년연맹의 대책수립 및 교육 등 개선을 통해 재위탁을 하였으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대책 신뢰성 여부, (사)한국청소년연맹의 청소년시설 운영방식 적정성 여부, 단순히 지적 사항이 ‘업무처리 미흡’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동대문수련관은 2014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서 수련관 중 소득기준 초과자 대상선정, 참가직원 출장여비 과다지급, 이용자부담비용을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부적정, 강습료 상한액 기준 미준수, 성범죄 경력 미조회,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인사관리규정 부적정,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능보강 사업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승인전 사용, 관리운영규정 미비. 세입업무 부적정, 보조금 관리 법령 미준수, 예산관리업무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16년 10월 전문위원실 현장 점검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 미활용, 클린카드 미사용, 예산집행 미흡, 운영관리규정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정기재물 조사 소홀, 시설운영규정 미흡, 사업계획 수립 내용 미흡, 공개채용 절차 미준수 등이 지적되었음.

○ 또한, 같은 시설을 8년간이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회계, 물품 관리 등 시설 운영의 기본사항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에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아울러, 평생교육국은 (사)한국청소년연맹의 전문성 확보여부에 대해 직원의 자격증 보유 수 및 전문 인력의 확보, 위탁시설의 수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한국청소년연맹은 전국에 27개소의 민간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 1개소 당 7.4명의 자격증 보유자를 배치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바, 관련 통계자료를 볼 때 시립청소년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나 대우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직원의 총 318명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00명 보유 (1급 36명, 2급 138명, 3급 26명)
 - 사업수행 가능 전문인력 73개 분야 517개 자격 보유(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등)
 - 전국 27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 중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 비율 : 50%(정규직 15명, 비정규직 15명) - 이직율 : 35.4%
- 출처 :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발체

- 전문성의 확보 여부는 청소년을 직접 교육하는 강사들의 직무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이나, (사)한국청소년연맹은 실제 위탁사업 수행직원 30명 중 15명을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인원(관장, 부장, 팀장, 업무지원자 등 제외)은 12명이고, 청소년활동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인원은 4명으로, 실제 167개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강사 등(비정규직 등(프로그램별 강사, 경력단절여성, 스타트업 대학생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시설의 전문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활동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 현황

	인원	업무지원					청소년활동					
		관리자	행정	시설	미화	안내	수영	헬스	지역연계	청소년활동	방과후아카데미	상담사업
소계	30	18					12					
		6*	3	3	3	3	2	1	1	4	3	1
정규직	15	6	3	-	-	1	2	-	-	2	-	1
비정규직	15	-	-	3	3	2	-	1	1	2	3	-

※ 관리자 6명은 관장 1명, 부장1명, 팀장4명임.

출처 :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발체 및 재구성

- 또한 (사)한국청소년연맹은 시립청소년시설의 최다 수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한국청소년연맹의 부적정한 인사, 회계·물품관리, 조직운영 등이 수년에 걸쳐 반복해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운영이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의 표준 또는 '서울시가 인정한 관행'이 될 수 있는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우리 사회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청소년시설의 위탁 분야에서 전문성과 조직규모, 재정현황 등을 기준으로 대규모 청소년 단체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재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수탁하도록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대규모 청소년단체의 장기수탁으로 인한 운영의 투명성 저하, 시립시설의 민간단체 부속화로 인한 공공성 상실 등을 방지하고, 청소년 단체들의 경쟁력 강화 및 능력있는 청소년단체의 발굴 등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다양성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사)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도 >



출처 : 한국청소년연맹 홈페이지(<http://www.koya.or.kr>)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⁵⁾는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소관 사무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종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2021.06.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출처 : 의안번호 597, 598, 599, 600의 제안이유 발췌

- 또한, 민간위탁 평가에서 재무, 인사, 회계에 지적사항이 집중되어 있고, 각 시설별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에 앞서 행정, 재정, 회계 등의 철저한 규정준수가 평생교육국과 수탁법인에 강력히 요구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단체는 대규모 단체들로 기본적인 행정처리 능력 및 위탁업무 수행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나, 회계, 인사, 계약 분야에서 공공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사항이 집중적·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바,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또는 시립시설의 사유화에 기인하는 안이함이 원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이러한 거대 청소년단체들은 지난 20여 년간 변하지 않는 서울시의 수탁기관 선발요건에 최적화되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수탁여부를 판가름하는 단체의 경력, 재무, 조직, 자격요건 등을 중요시 여기는바,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수탁할 수 있도록 선발요건의 다양화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정단체의 장기수탁을 방지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관리상, 행정상 업무를 축소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에 있는바, 행정 편의를 위하여 거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시설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0,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97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2011.9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19.06.30.자로 3번째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나. 금년 1.22.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사업비 내역 보완 및 제출 등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해 공개채용 절차(공고기간 준수), 지출처리(건별 품의 작성), 사업비 투명성 확보 (175개 사업비 편성내역 제출) 등 보완 조치 완료하였음.
- 다. 최종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2021.06.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시설로,
- 지난 3년간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은, 1981년 설립되어 청소년활동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등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
-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내 사랑의교실, 특별교육 등 위기청소년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간관계 회복에 기여하며, 모범적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 청소년전용공간 “소행성”, 청소년상설체험공간 “아트박스”를 조성하여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특성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MOU를 체결하여 기업탐방, 디자이너 초빙 강의 및 실습 등 연계사업을 강화하였고, 4차산업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융합패션사업을 전개함
-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동 법인에게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을 2년간 재계약 운영토록 하고자 함

○ 3년간 주요 추진실적

- 이용인원

사업구분	이용 인원	청소년 이용인원	청소년 이용률
2016년	496,278명	294,492	64%
2017년	428,450명	299,149	68%
2018년	495,431명	346,503	70%

- 지역·학교연계 실적

구분	연도	기관	프로그램
학교연계	2016	10	99
	2017	6	105
	2018	33	224
지역사회연계	2016	4	15
	2017	7	17
	2018	16	15

- 주요 우수사항

- ▶ 2016년 청소년시설 운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서울특별시)
- ▶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선정 (여성가족부)
- ▶ 2017년 청소년시설 운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특별시)

다. 위탁 사무의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 개관일자 : 2003.05.01
- 시설규모 : 부지 2,899 m^2 , 연면적 4,888 m^2 (지하 2층, 지상 5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헬스장, 상설체험관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년 (2019.07.1 ~ 2021.0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939백만원('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649백만원, 물건비 573백만원, 경상이전 129백만원, 자본지출 226백만원, 사업비 1,220백만원, 사업외 지출 등 기타 14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조건부 적정 조치결과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최종 ‘적정’의결】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 종합성과평가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및 ‘사업비 투명성 확보’에 대한 조건부 적정
- 2018년 종합성과평가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
 - 공개채용 절차 부적정 : 신규채용 15일 이상, 재공고 및 계약직 종사자는 불가피한 경우 10 이상 공고기간 준수 및 직원예정자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전 실시하고, 향후 종사자 채용 절차 준수 및 고용안정화 정책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 지출업무처리 부적정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시 대상, 인원수 기재 및 건별 품의 작성 등 지출업무처리절차를 준수하였으며,
 - 물품관리 부적정 : 정기재물조사 계획 및 조사결과 청소년정책과 보고하였으며, 재물조사표(조사일자 표기 및 이전 법인의 미기재 자산) 부착, 주요 소모품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등 물품관리 절차를 준수함
 -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2017년 운영위원회 개최 시 참석자 서명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원초과(26명)에서 18명으로 적정 구성 완료함
- 사업비 투명성 확보
 - 전년도 사업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7개분야 27개 사업 175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편성내역을 제출하여 사업비 투명성을 확보함
- 상기 적정조건의 보완·제출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적정’ 의결 통보(2019.2.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은진 (☎2133-4122)